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한 해상물류체계의 구축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소금산업 연구 및 천일염 제조 관련 안전성 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 국가 어업지도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3명(5급 3명, 6급 9명, 7급 18명, 8급 21명, 9급 12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및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6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598”을 “599”로 하고, 일반직 계 “594”를 “5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7”을 “57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921”을 “2,9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810”을 “2,8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87”을 “2,862”로 한다.

별표 5 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6항 및 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한시정원) ① ~ ⑮ (생략) <u>⑯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u>	제55조(한시정원) ① ~ ⑮ (현행과 같음) <u><삭 제></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8</u>	<u>599</u>	+1
·	·	·	
·	·	·	
일반직 계	<u>594</u>	<u>59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77</u>	<u>578</u>	+1
·	·	·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21</u>	<u>2,996</u>	+75
·	·	·	
·	·	·	
일반직 계	<u>2,810</u>	<u>2,885</u>	+7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87</u>	<u>2,862</u>	+7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